

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-241 호

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 
위탁기관 지정 고시

2024. 5.

## 1. 개정이유

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‘알뜰교통카드 사업’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‘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’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173호, 2024. 1. 30. 공포, 2024. 5. 1. 시행)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·관리업무의 위탁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”로 한다.

제1호 중 “알뜰교통카드 사업과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”로, 같은 호 중 “알뜰교통카드 정보 시스템의”를 “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”로 한다.

제3호1)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고, 같은 1) 중 “마일리지”를 “환급금”으로 하며, 같은 1)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고, 같은 1) 중 “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”를 “지역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며, 같은 호 2)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지원카드”로 하고, 같은 2)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2) 중 “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”를 “환급금”으로 하고, 같은 2)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지원카드”로 한다.

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5. 재검토기한

○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· 관리</u> <u>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</u></p> <p>1. 위탁기관 지정 목적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12에 따른 <u>알뜰교통카드 사업</u>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<u>알뜰교통카드 정보 시스템</u>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함.</p> <p>3. 위탁업무의 내용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) <u>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· 관리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- 지자체별 <u>마일리지</u> 정산 및 보조금 관리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- <u>알뜰교통카드 사업 성과</u> 및 통계 분석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- <u>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) <u>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 운영 · 관리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</u> <u>운영 ·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</u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</u>과 ----- <u>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</u>의 -----.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)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---- <u>환급금</u> ----- ----- -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 <u>지역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) <u>대중교통비지원카드</u> -- -----</p>

-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및 앱 운영·관리
-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 및 지급
-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

<신 설>

-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관련 -----
- 환급금 -----
- 대중교통비지원카드 -----

5. 재검토기한

○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

## 지정 고시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·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### 1. 위탁기관 지정 목적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함.

### 2. 위탁기관

- 기관명: 한국교통안전공단
  - 대표자: 권용복
  - 소재지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

### 3. 위탁업무의 내용

1)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·관리

-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
-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
-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
-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

2)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·관리

-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·관리
-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·관리
- 환급금 산정 및 지급
-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
-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
-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

4. 위탁기관 지정 기간

-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

5. 재검토기한
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